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퇴직금규정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퇴직금규정

【제정 2018. 1.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제36조에 따라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균임금”이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이하 “연봉제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1호 및 제12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퇴직급여”란 근속기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퇴직급여 총당금”이란 퇴직금으로 총당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근속기간 중 일정한 방법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장 퇴직급여

제4조(퇴직급여 지급대상) 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임직원에게 한한다.

② 퇴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공단의 임직원이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는 별표 1에 따라 퇴직급여를 감액 지급한다.

1. 의원면직
2. 정년퇴직
3. 직권면직
4. 임기만료퇴직

5. 사망
6. 명예퇴직
7. 조기퇴직
8. 퇴직금 중간정산
9.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

제5조(지급기준) ① 퇴직급여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②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기간 중 퇴직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산정을 위한 역산의 기산일은 휴직개시일로 한다.

제6조(근속년수의 계산) ① 근속년수의 계산은 임명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만 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초과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하되 월할 계산시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39조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감한다.

③ 임원이 연임하여 근무하는 기간은 계속 근속년수로 산정한다.

제7조(퇴직금 중간정산) ① 임직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로 본인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매분기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자의 퇴직급여 총당금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가 일시적으로 과다하여 퇴직급여 총당금 부족 등으로 지급불가사유 발생 시 다음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기근속자
2. 급여가 압류처분 중에 있는 자
3. 부양가족이 많은 자
4. 임금피크제 대상자
5. 그 밖의 주택구입자금, 친족의 와병 치료비 등 긴급자금 소요자

③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재신청할 수 없다.

제8조(퇴직급여 총당금) ① 퇴직급여에 총당하기 위하여 매년도 임직원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 총당금으로 예산에 계상한다.

② 퇴직급여 총당금은 금융기관 등에 의하여 별도 관리한다.

제9조(명예퇴직금) ① 명예퇴직금은 인사규정 제42조에 따라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② 명예퇴직금의 지급액은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명예퇴직금 지급신청자 중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 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④ 명예퇴직원 제출자 과다로 인하여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1. 상위직 직원

2. 장기근속 직원

제10조(명예퇴직금 지급신청) ① 직원으로서 명예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금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11조(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① 이사장은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금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선고된 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및 재직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명예퇴직금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 이율을 적용한다.

제12조(조기퇴직금) ① 직원으로서 인사규정 제38조에 따라 조기퇴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금은 퇴직당시 기본급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신청일 현재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기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퇴직급여 등의 수령권자) ① 퇴직급여 및 명예퇴직금은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퇴직자가 사망(업무상, 업무 외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유족범위에 관하여 퇴직금의 수급자의 범위와 순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50조를 준용한다.

제14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정 외에 그 밖의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민법」을 준용한다.

[별표 1]

퇴직급여의 감액 기준 (제4조제2항관련)

구 분	감 액 율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8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

[별표 2]

명예퇴직금 지급액 산정표 (제9조제2항관련)

정년 잔여기간별 대상자	산 정 기 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 기본급의 반액 × 정년 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 기본급의 반액 × [60+(정년 잔여월수 - 60)/2]
3. 10년 초과인 자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비고 :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
되,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
지 아니한다.

[별표 3]

환수금 산정 기준표 (제11조제3항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금 전액
2. 명예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의 명예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	가. 명예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나.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금 전액

[별지 제1호 서식]

명예퇴직금 지급신청서

소 속		직 종		직 급 및 호봉	급 (호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한자)	주 소			
전화번호		근속기간	년 월	생년월일	년 월 일
정 년 잔여기간	년 월 일		퇴직급여		
산출내역					
입 금 처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p>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을 하기 위하여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퇴직금규정」 제9조에 따라 명예퇴직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인)</p>					
확 인	인사담당자	(인)	연금담당자	(인)	
<p>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right;">경영지원팀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p>					

